

소방생활법률-5

소방시설설치·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의무

※ 소방생활법률에서는 일상 또는 업무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.

소방대상물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방시설을 알맞게 설치·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특히,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소방시설, 안전시설 등도 추가로 설치·유지해야 합니다. 또한, 「건축법」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·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◇ 소방시설,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유지 의무

○ 소방대상물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(이하 “관계인”이라 함)는 그 소방대상물의 규모·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알맞게 설치·유지해야 합니다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).

○ 특히,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 외에도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소방시설, 안전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알맞게 설치·유지해야 합니다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).

※ 특별히 산후조리업의 영업장,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).

◇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의무

○ 소방대상물(다중이용업소 포함)의 관계인은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(防火區劃) 및 「건축법」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, 내부 마감재료 등(이하 “방화시설”이라 함)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).

- 1)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
- 2)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
- 3)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, 재난·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(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)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
- 4) 그 밖에 피난시설·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

◇ 위반 시 제재

■ 소방시설,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유지 의무 위반 시 제재

○ 개선조치명령

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소방시설 등을 보완하는 등의 개선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).
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소방시설 등을 보완하는 등의 개선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2항).

○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

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

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2제1호).

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· 다중이용업주가 개선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치 내용(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)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제1항).

· 또한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구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제1항 및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4 개별기준표의 제1호).

가) 소방시설 등의 작동·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 : 200만원

나) 소방시설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: 600만원

다)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: 1,000만원

○ 과태료

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1항제1호 및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0 제2호가목,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1항제2호 및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3 개별기준표의 제2호).

1) 소방시설의 작동·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·유지하지 않은 경우 : 50만원

2)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: 100만원

가.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

나. 수신반 전원, 동력(감시)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

거나,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,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

다.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

3)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: 200만원

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

○ 개선조치명령

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개선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).

○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

- 위 개선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2제1호).

○ 과태료

-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·훼손·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1항제2호 및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9 제2호나목·다목).